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52675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나○○
피고, 피항소인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단7073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 11행의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B,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 이전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때 원고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주식의 교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한 이후인 2021. 9. 1.경 날짜를 소급하여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였으므로, 계정별원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각 목은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해제계약서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하고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상법 제423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423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그 납입기일에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규정한 것이어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되는 취득세가 문제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주발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 제295조 제2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칠 것을 요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B, C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현물출자자 B, C에게 원고 주식을 지급하되, B, C가 각 지급받을 주식수는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라 평가된 현물출자가액을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물출자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되, 그 부동산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2) B, C는 감정인 ㈜E에게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1. 3.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152,844,350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2021. 4.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정관 제5조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수를 40,000주에서 11,275,372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B에게 B의 현물출자 가격 평가액(362,975,000원[1])에 따른 기명식 보통주식 362,975주,

1)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152,844,350원 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의 지분(49.95/100) - B의 부채 3,209,870,000원 (을 제7호증 5쪽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C에게 C의 현물출자 가격 평가액(2,449,868,000원[2])에 따른 기명식 보통주식 2,449,868주의 신주를 그 납입기일을 법원인가일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변경된 주주명부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3) 춘천지방법원은 2021. 7. 9. 위 감정평가서를 인가하였는데, 같은 날 B, C는 2021. 4. 15.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인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21. 7. 21. 변경일자를 2021. 7. 10.로 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종전 10,000주에서 2,822,843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2021. 7. 21. 건물 278,284,350원', '2021. 7. 21. 토지 6,874,56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이 인가한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7,152,844,350원 = 건물 278,284,350원 + 토지 6,874,560,000원)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및 원고의 2021. 4. 15. 이사회결의에 따라 B, C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법원의 인가일에 B, C로부터 주식인수증을 교부받으며, 2021. 7. 21. B, C에 대한 신주 발행을 반영하여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의 계정별원장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기재하였던 이상, 늦어도 2021. 7. 21.경에는

2)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152,844,350원 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지분(50.05/100) - C의 부채 1,130,130,000원 (을 제7호증 5쪽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현물출자자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법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그 이후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폐업하고, 해산등기까지 마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B, C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 이전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때 원고의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의 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만큼의 원고 주식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B, C의 각 소유 지분 및 부채액을 고려한 현물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식수만큼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원고가 가진 별다른 자본이 없어 원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라) 한편, 원고는 2021. 7. 21.에는 원고의 계정별원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한 이후인 2021. 9. 1.경 날짜를 소급하여 계정별원

3)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고가 2021. 8. 12. B, C와 사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B, C가 2021. 7. 9. 원고의 주식을 각 인수할 무렵에는 원고가 적어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무렵 원고의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21호증(서류 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2021. 7. 21. 취득세 신고시 원고가 제출하겠다고 하였던 법인 원장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니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계정별원장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해제 이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취득일에 그 취득가격을 법인장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이후 법인장부 등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장부 작성일에 소급하여 그 취득 사실이 기재될 여지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늦어도 2021. 7. 21.경에는 현물출자자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계정별원장에 '2021. 7. 21. 건물 278,284,350원', '2021. 7. 21. 토지 6,874,56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이상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증명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기재가 설령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합의해제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5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그 문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최○○

판사 윤○○